

의안번호	제163호
의결연월일	2022. 10. 18.

논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, 제안자 : 2022년 10월 06일, 논산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06일
- 다. 상정일자 : 2022년 10월 1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 설명자 : 신속허가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「건축물관리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을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건축물관리법」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“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”란 “폭 20미터 이상의 도로”로 근거 마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